

의안번호	제420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

의안 번호	42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 2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목적
 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,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출자근거
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 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-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- 기대효과
 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, 유망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3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□ 출자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혁신창업팀	이혜란	이나경	장유나	220-3232

사업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																								
출자대상	<p>① 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엑스퀘어드(주)-(주)푸른인베스트먼트 - 유한책임조합원 :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, 충청북도, 부국사료, 네이처이엔티, 운강건설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 : 220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모태펀드(농림부) 100, 충청북도 20, 부국사료 40, 네이처이엔티 25, 운강건설 25, 푸른인베스트먼트 8, 엑스퀘어드 2 - 투자대상 : 스마트팜, 대체식품,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분야 창업기업 - 도 투자조건 : <u>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4배(8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</u> <p>②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BSK 인베스트먼트 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, 충청북도, 백산, 경기도, 신영증권, 넥스틴, 세란병원, 장원의료재단, 청담글로벌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 - 펀드규모 : 285억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모태펀드(중기부) 125, 충청북도 20, 백산 20, 경기도 14, 신영증권 20, 넥스틴 20, 세란병원 20, 장원의료재단 20, 청담글로벌 20, BSK 6 - 투자대상 : 바이오 헬스, 모빌리티,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, 창업초기(3년이내) 60% 이상 투자 - 도 투자조건 : <u>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2배(4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</u> 																								
	출자사업비	<p>○ 출자 예정금액 : 4,000백만원(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4,000)</p> <p>○ 출자내용 (단위 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총 계</th> <th>2023년</th> <th>2024년</th> <th>2025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40</td> <td>12</td> <td>16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</td> <td>20</td> <td>6</td> <td>8</td> <td>6</td> </tr> <tr> <td>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</td> <td>20</td> <td>6</td> <td>8</td> <td>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</p>					구 분	총 계	2023년	2024년	2025년	총 계	40	12	16	12	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	20	6	8	6	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	20	6	8
구 분	총 계	2023년	2024년	2025년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40	12	16	12																					
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	20	6	8	6																					
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	20	6	8	6																					

<p>출 자 필 요 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 및 농업,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, 육성 및 투자까지 연계한 성장지원을 통해 충북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○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투자활성화의 기초를 구축하여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
<p>근거법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1호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벤처투자조합
<p>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,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은 각각 농림 축산식품분야, 도 주력산업분야에 특화된 펀드로, 충청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투자조합임. ○ 각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,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충북지역 주력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 ○ 창업기업을 위한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→성장→회수 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<p>첨부자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1-①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: 해당없음

2 출자금 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모험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초기창업자 대상 투자금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
- 결성 예정인 2개 펀드에 대해 도 출자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4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3 펀드별 출자금 검토

1 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220	100%
LP(출자자)	충청북도	20	10%
	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	100	45%
	부국사료	40	18%
	네이처이앤티	25	11%
	운강건설	25	11%
GP(공동 운용사)	엑스퀘어드-푸른인베스트먼트	10	5%

2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285	100%
LP(출자자)	충청북도	20	7%
	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	125	44%
	백산	20	7%
	경기도	14	5%
	신영증권	20	7%
	넥스틴	20	7%
	세란병원	20	7%
	장원의료재단	20	7%
	청담글로벌	20	7%
GP(운용사)	BSK인베스트먼트	6	2%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조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※ 운용사 출자 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
〔근거법령〕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
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1-② 출자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	구분	출자	4,000백만원
주관부서	경제기업과		출연	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대상 마중물 투자를 실시하여 창업기업 자금난 해소 및 성장기반 마련
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부터 육성까지 성장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

□ 출자개요

① 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
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엑스퀘어드(주)-(주)푸른인베스트먼트
- 유한책임조합원 :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, 충청북도, 부국사료, 네이처이앤티, 운강건설
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- 펀드규모 : 220억원
 - 모태펀드(농림부) 100, 충청북도 20, 부국사료 40, 네이처이앤티 25, 운강건설 25, 푸른인베스트먼트 8, 엑스퀘어드 2
- 투자대상 : 스마트팜, 대체식품,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분야 창업기업
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4배(8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②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
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BSK 인베스트먼트
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, 충청북도, 백산, 경기도, 신영증권, 넥스틴, 세란병원, 장원의료재단, 청담글로벌
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- 펀드규모 : 285억원
 - 모태펀드(중기부) 125, 충청북도 20, 백산 20, 경기도 14, 신영증권 20, 넥스틴 20, 세란병원 20, 장원의료재단 20, 청담글로벌 20, BSK 6
- 투자대상 : 바이오 헬스, 모빌리티,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, 창업초기(3년이내) 60% 이상 투자
- 도 투자조건 : 도 출자액(20억)의 최소2배(40억)이상 도내 기업 투자

□ 산출기초

① 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

- 조합원 출자약정 : 220억원(모태펀드 100, 도 20, 기타 100)
- 도 출자계획 : 20억원('23년 6억, '24년 8억, '25년 6억)

② 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

- 조합원 출자약정 : 285억원(모태펀드 125, 도 20, 기타 140)
- 도 출자계획 : 20억원('23년 6억, '24년 8억, '25년 6억)

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구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
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모태펀드 (국비)	도비	기타
계	505	225	40	240
엑스퀘어드-푸른 그린펀드	220	100	20	100
BSK 11호 넥스트 유니콘 투자조합	285	125	20	140

□ 기대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투자→성장→회수→재투자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□ 출자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금번 조성하는 2개 펀드는 도내 성장가능성 높은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서 직접 공고하고 운용사를 선정한 펀드로, 미 승인시 펀드 결성 및 투자 기회 소멸, 향후 충북도의 펀드 결성 및 참여에 어려움 발생 예상
- 도내 창업·벤처기업들이 자금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소멸 및 창업생태계 구축 지연

관련 법령

□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
□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4. 한국벤처투자조합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